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도로점용료산정기준표 <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1. 전주 공 중전화, 송전탑, 기타 유사 한 것	전 주		1 개	1 년	600
	전 주 와 유 사 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 전 탑 및 기 타 의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 관, 하수 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유사 한 것	수도 관, 하수 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신선, 통설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 년	150
		직경 0.1m 초과 직경 0.2m 이하			300
		직경 0.2m 초과 직경 0.4m 이하			600
		직경 0.4m 초과 직경 0.6m 이하			900
		직경 0.6m 초과 직경 0.8m 이하			1,200
		직경 0.8m 초과 직경 1.0m 이하			1,500
		직경 1.0m 초과 직경 2.0m 이하			2,250
		직경 2.0m 초과 직경 3.0m 이하			3,750
		직경 3.0m 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직경 0.2m 이하		450		
	직경 0.2m 초과 직경 0.4m 이하		9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직경 0.4m 초과 직경 0.6m 이하			1,350
		직경 0.6m 초과 직경 0.8m 이하			1,800
		직경 0.8m 초과 직경 1.0m 이하			2,250
		직경 1.0m 초과 직경 2.0m 이하			3,350
		직경 2.0m 초과 직경 3.0m 이하			5,600
		직경 3.0m 초과			7,850
3. 광고탑, 광고판, 광고판간판 (둘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간판 (둘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 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	1 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 개	1 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 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1 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 년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6.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점용한것		점용면적 1㎡	1 일	10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 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